

韓國과 日本의 飼料添加劑 關聯 制度 比較

사료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료첨가제가 일본에서는 사료안전법을 적용받는 사료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어 별다른 규제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업계의 주장은 일본의 사료안전법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인 애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약사법에서 사료첨가제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사료첨가물은 사료안전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용도에 따라 항생제, 항균제, 비타민, 미네랄 등 총 114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사료안전법에서 사료첨가물을 규정함으로서 사료업계의 주장처럼 자유롭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의약품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사료첨가물을 관리하고 있다.

사료업계의 현실적 조건과 정부의 사료관련법 제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만 아니라, 사료의 위생 및 안전성과 품질관리상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미국, EU 등의 선진국가에서도 분류 자체는 사료첨가물, 약첨사료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관리와 규제에 있어서는 GMP, GLP 등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하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사료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자재위원회에서 사료첨가물 평가기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준함)에 의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료와 사료첨가물의 제조, 표시, 성분규격에 대한 규제(사료첨가물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와 아울러 사료 제조관리자(사료안전법 제2조의 8) 및 품질관리자(인정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성 고시)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생항균성 물질·낙화생유찌찌·요소·생균제 등 유해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축 등에 피해가 생김으로써 축산물의 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정사료, 특정사료첨가물, 성분규격이 설정된 사료첨가물들은 검정을 받게 하고 있으며 공정규격이 정해진 사료(규격설정사료)에 대해서도 검정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의약품에 준하는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료첨가물의 대부분을 동물약품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사료첨가물이 의약품에 준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칭이 사료첨가물이라고 해서 혹은 그 관리 법규가 사료안전법이라고 해서 사료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료업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애곡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품질관리에 대해 비교해 보면 국내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품질관리를 위한 인원과 시설 기준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품질관리 시설 및 그 인원의 자격, 인원수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실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료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시설 및 인원을 타 회사와 공동으로 갖추거나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자체에 품질관리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 고시를 통해 제조, 보관, 품질관리에 대해 제조하는 사료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품질 관리 인원의 자격과 인원수, 품질관리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사료 관련 법규는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규제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없이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이관해 달라는 사료업계의 주장은 자기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행위로 축산농가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사료업계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이관코자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에 대한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사료 관련 법규 비교

구 분	한 국 (사료관리법)	일 본 (사료안전법)
목 적	사료 수급·가격안정 품질향상·안전성확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
정 의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 사료첨가물
제조 규제	성분등록	사료의 성분규격 및 제조 등의 방법과 표 시기준 설정
제조관리자	-	유자격 제조관리자 (수의사, 약제사 등)
품질관리자	품질관리 인원 확보	유자격 품질관리자
품질관리	농림부 고시가 있으나 구체적 기준 없음	농림수산성 고시로 조 직, 시설, 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동물시험	-	일반독성, 특수독성, 잔류, 영양시험 등
안전성시험	-	안전성 평가지침 고시
공정규격	농림부 고시	농림수산성 고시
사전검사	-	특정사료, 특정사료첨 가물, 성분규격이 정 해진 사료에 대한 검 정과 공정규격에 정해 진 사료에 대한 검정
사후검사	검사의뢰시 실시	사료검사규칙에 의해 실시
검사표시	-	검정합격, 규격적합 표시
폐기·회수	-	해당규격, 기준, 표시 부적합사료 및 검정합 격 미표시, 유해사료 등은 폐기·회수 명령